

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75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5월 3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, 학생보호인력 운영방식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부칙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함(안 부칙).

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2023년”을 “2024년”으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〈 수정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<u>국공립</u> 초등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~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<u>국공립 및 사립</u> 초등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~4. 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23년</u>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24년</u>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국공립”을 “국·공립 및 사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〈 신 · 구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<u>국공립</u> 초등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~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<u>국공립 및 사립</u> 초등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~4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